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6.

발 의 자 : 강명구 · 윤한홍 · 김정재
김형동 · 박준태 · 이종배
성일종 · 강민국 · 서천호
구자근 · 김재섭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를 시·군·구로 규정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(市)에 속한 농촌 지역인 읍·면의 경우는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심각하여도 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.

이에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·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현행법에서 해당 읍·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·면에 대한

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, 제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3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시·도와 시·군·구를 합쳐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”를 “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거나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·군·구(이하 시·도와 시·군·구를 합쳐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”을 “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인구감소지역의”를 “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인구감소지역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 또는 <u>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시·도와 시·군·구를 합쳐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</u> 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.	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이거나 <u>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·군·구(이하 시·도와 시·군·구를 합쳐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<u>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은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(이	제6조(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<u>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또는 <u>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 -----

하 “시·군·구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~ ⑦ (생략) 제22조(교육기반의 확충) ① . ② (생략) ③ <u>인구감소지역의</u>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「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」 제11조제8항에도 불 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 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 비를 보조할 수 있다. ④ ~ ⑫ (생략)	----- -----.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제22조(교육기반의 확충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</u> <u>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인구</u> <u>감소지역의</u> ----- ----- -----. ④ ~ ⑫ (현행과 같음)
---	---